

[별첨]

## 익산시 부송동 에코르(부송4지구 A블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주택으로 **재당첨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소유 및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당첨자는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신청접수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자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를 통해 인터넷 청약 신청하여야 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과 전북개발공사([www.jbdc.co.kr](http://www.jbdc.co.kr))의 입주자모집공고문 (**‘26.10.08. 공고 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청약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공급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고, **제출기한(‘26.10.13. 18시까지)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기간연장 없음)**  
※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주택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주택공급 개요                                                                                                                                                                                                                                                                                                                            |
|---------|------------------------------------------------------------------------------------------------------------------------------------------------------------------------------------------------------------------------------------------------------------------------------------------------------------------------------------|
| 개 요     |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 임 대 조 건 |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br>·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3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 분양전환가격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br>※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유 의 사 항 | - 입주자는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b>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b><br>(단,「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br>-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br>-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 I 공급개요 및 일정

### □ 공급규모

- 공급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송동 1421(익산 부송지구 도시개발사업 A블록)
- 공급규모 : 지하 1층 ~ 지상 최고 20층, 4개동, 공공임대주택 총 300세대
- 입주예정시기 :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고

### □ 공급세대

| 주택형<br>(전용면적기준) | 약식<br>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총 공급<br>세대수 | 비고 |
|-----------------|----------|------------|------------|--------|-------------|----|
|                 |          | 주거<br>전용면적 | 주거<br>공용면적 | 공급면적   |             |    |
| 59.9288A        | 59A      | 59.929     | 24.257     | 84.186 | 83          |    |
| 59.3359B        | 59B      | 59.336     | 24.630     | 83.966 | 75          |    |
| 59.9793C        | 59C      | 59.979     | 24.522     | 84.501 | 142         |    |
| 합 계             |          |            |            |        | 300         |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계 면적입니다.

※ 청약 신청 기관별 배정시 지정된 주택 타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기관별 신청가능 주택형 및 배정물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배정 물량에 따라 신청 가능 주택 타입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 1.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30)

| 추천대상자            | 해당 추천기관                                    | 입주자저축            | 계  | 59A | 59B | 59C |
|------------------|--------------------------------------------|------------------|----|-----|-----|-----|
| 합 계              |                                            |                  | 30 | 8   | 7   | 15  |
| 장기 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br>(전북서부보훈지청 보상과)                    | 필요(6개월,<br>6회이상) | 3  | 1   | 1   | 1   |
|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국군복지단(복지사업운영과)                             | 필요(6개월,<br>6회이상) | 3  | 1   | 1   | 1   |
| 의사상자 등           | 전북특별자치도<br>(사회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필요(6개월,<br>6회이상) | 3  | 1   | -   | 2   |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br>(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필요(6개월,<br>6회이상) | 1  | -   | 1   | -   |
| 남북피해자            |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 필요(6개월,<br>6회이상) | 1  | -   | 1   | -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필요(6개월,<br>6회이상) | -  | -   | -   | -   |
| 연금기금 등           | 공무원연금공단(주택사업실)                             | 필요(6개월,<br>6회이상) | -  | -   | -   | -   |
| 장애인등복지이 교부된 사람 등 | 전북특별자치도<br>(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시설안전팀)             | 불필요              | 9  | 2   | 2   | 5   |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전북특별자치도<br>(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                  | 필요(6개월,<br>6회이상) | 3  | -   | 1   | 2   |
| 우수선수             | 대한체육회<br>(체육진흥본부 선수지도지원부)                  | 필요(6개월,<br>6회이상) | 2  | 1   | -   | 1   |
| 우수기능인            | 한국산업인력공단(국제기능경기부)                          | 필요(6개월,<br>6회이상) | 2  | 1   | -   | 1   |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벤처기업부<br>(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필요(6개월,<br>6회이상) | 2  | 1   | -   | 1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br>(스포츠진흥본부 스포츠복지실 체육인복지팀) | 필요(6개월,<br>6회이상) | 1  | -   | -   | 1   |

## 2.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세대수(30)

| 추천대상자   | 해당 추천기관                 | 입주자저축 | 계  | 59A | 59B | 59C |
|---------|-------------------------|-------|----|-----|-----|-----|
| 합 계     |                         |       | 30 | 8   | 7   | 15  |
|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br>(전북서부보훈지청 보상과) | 불필요   | 30 | 8   | 7   | 15  |

☐ 임대조건 : 미정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공급일정

|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 입주자모집공고  | 2026. 10. 08. | 일간신문 및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a href="http://www.jbdc.co.kr">www.jbdc.co.kr</a> )               |
| 추천대상자 회신 | 2026. 10. 13. | 동 안내문 참고                                                                               |
| 특별공급접수일자 | 2026. 10. 22.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인터넷 청약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후 '청약홈'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을 통해 확정된 일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모두 위 접수일자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기본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 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신생아,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세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10.22예정)에 (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공급대상 주택 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청약홈’에 게시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단, 예비대상자 본인의 경우 일반공급만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주택타입(59A, 59B, 59C)으로 접수하며,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타입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잔여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주택형 및 주택타입 세부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주소 및 관람 가능기간 등은 공고일 청약홈 홈페이지에 공고문과 함께 게재 예정)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신청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등의 신청자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전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대략적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하며, 안내문에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Ⅲ 위치도, 조감도 및 평면도

■ 위치도: 전북 익산시 부송동 1421번지 일대



※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 지역 및 위치, 거리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감도



※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 지역 및 위치, 거리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호수 배치도

|       |      |      |        |
|-------|------|------|--------|
|       |      | 1902 | 1901   |
|       |      | 1802 | 1801   |
| 1704  | 1703 | 1702 | 1701   |
| 1604  | 1603 | 1602 | 1601   |
| 1504  | 1503 | 1502 | 1501   |
| 1404  | 1403 | 1402 | 1401   |
| 1304  | 1303 | 1302 | 1301   |
| 1204  | 1203 | 1202 | 1201   |
| 1104  | 1103 | 1102 | 1101   |
| 1004  | 1003 | 1002 | 1001   |
| 904   | 903  | 902  | 901    |
| 804   | 803  | 802  | 801    |
| 704   | 703  | 702  | 701    |
| 604   | 603  | 602  | 601    |
| 504   | 503  | 502  | 501    |
| 404   | 403  | 402  | 401    |
| 304   | 303  | 302  | 301    |
| 관리사무실 | 필로티  | 필로티  | 피트니스센터 |
|       | 필로티  | 필로티  |        |
| 59A   | 59C  | 59B  | 59C    |

101동 (64세대)

|      |      |      |      |
|------|------|------|------|
| 2004 | 2003 | 2002 | 2001 |
| 1904 | 1903 | 1902 | 1901 |
| 1804 | 1803 | 1802 | 1801 |
| 1704 | 1703 | 1702 | 1701 |
| 1604 | 1603 | 1602 | 1601 |
| 1504 | 1503 | 1502 | 1501 |
| 1404 | 1403 | 1402 | 1401 |
| 1304 | 1303 | 1302 | 1301 |
| 1204 | 1203 | 1202 | 1201 |
| 1104 | 1103 | 1102 | 1101 |
| 1004 | 1003 | 1002 | 1001 |
| 904  | 903  | 902  | 901  |
| 804  | 803  | 802  | 801  |
| 704  | 703  | 702  | 701  |
| 604  | 603  | 602  | 601  |
| 504  | 503  | 502  | 501  |
| 404  | 403  | 402  | 401  |
| 304  | 303  | 302  | 301  |
| 어린이집 | 203  | 202  | 필로티  |
|      | 103  | 102  | 필로티  |
| 59A  | 59C  | 59B  | 59C  |

102동 (76세대)

|      |      |      |      |
|------|------|------|------|
| 2004 | 2003 | 2002 | 2001 |
| 1904 | 1903 | 1902 | 1901 |
| 1804 | 1803 | 1802 | 1801 |
| 1704 | 1703 | 1702 | 1701 |
| 1604 | 1603 | 1602 | 1601 |
| 1504 | 1503 | 1502 | 1501 |
| 1404 | 1403 | 1402 | 1401 |
| 1304 | 1303 | 1302 | 1301 |
| 1204 | 1203 | 1202 | 1201 |
| 1104 | 1103 | 1102 | 1101 |
| 1004 | 1003 | 1002 | 1001 |
| 904  | 903  | 902  | 901  |
| 804  | 803  | 802  | 801  |
| 704  | 703  | 702  | 701  |
| 604  | 603  | 602  | 601  |
| 504  | 503  | 502  | 501  |
| 404  | 403  | 402  | 401  |
| 304  | 303  | 302  | 301  |
| 필로티  | 203  | 필로티  | 필로티  |
| 필로티  | 103  | 경로당  | 필로티  |
| 59A  | 59C  | 59B  | 59C  |

103동 (74세대)

|      |        |      |      |      |
|------|--------|------|------|------|
|      |        |      | 2002 | 2001 |
|      |        |      | 1902 | 1901 |
| 1805 | 1804   | 1803 | 1802 | 1801 |
| 1705 | 1704   | 1703 | 1702 | 1701 |
| 1605 | 1604   | 1603 | 1602 | 1601 |
| 1505 | 1504   | 1503 | 1502 | 1501 |
| 1405 | 1404   | 1403 | 1402 | 1401 |
| 1305 | 1304   | 1303 | 1302 | 1301 |
| 1205 | 1204   | 1203 | 1202 | 1201 |
| 1105 | 1104   | 1103 | 1102 | 1101 |
| 1005 | 1004   | 1003 | 1002 | 1001 |
| 905  | 904    | 903  | 902  | 901  |
| 805  | 804    | 803  | 802  | 801  |
| 705  | 704    | 703  | 702  | 701  |
| 605  | 604    | 603  | 602  | 601  |
| 505  | 504    | 503  | 502  | 501  |
| 405  | 404    | 403  | 402  | 401  |
| 305  | 304    | 303  | 302  | 301  |
| 필로티  | 주만공동시설 | 필로티  | 202  | 필로티  |
| 필로티  |        | 필로티  | 102  | 필로티  |
| 59A  | 59C    | 59A  | 59B  | 59C  |

104동 (86세대)

## ■ 단지 배치도



※ 단지배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 지역 및 위치, 거리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평면도

### 59A형

세대 수 83세대

- 주거 전용 면적 59.929m<sup>2</sup>
- 주거 공용 면적 24.257m<sup>2</sup>
- 공급 면적 84.186m<sup>2</sup>
- 지하 주차장 면적 24.040m<sup>2</sup>
- 기타 공용 면적 6.494m<sup>2</sup>
- 계약 면적 114.720m<sup>2</sup>



## 59B형

세대 수 75세대

- 주거 전용 면적 59.336m<sup>2</sup>
- 주거 공용 면적 24.630m<sup>2</sup>
- 공급 면적 83.966m<sup>2</sup>
- 지하 주차장 면적 23.801m<sup>2</sup>
- 기타 공용 면적 6.430m<sup>2</sup>
- 계약 면적 114.199m<sup>2</sup>



## 59C형

세대 수 142세대

- 주거 전용 면적 59.979m<sup>2</sup>
- 주거 공용 면적 24.522m<sup>2</sup>
- 공급 면적 84.501m<sup>2</sup>
- 지하 주차장 면적 24.060m<sup>2</sup>
- 기타 공용 면적 6.500m<sup>2</sup>
- 계약 면적 115.061m<sup>2</sup>



※ 본 세대는 발코니 부분확장형이 기본형으로 공급됩니다.

※ 상기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 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실제 시공과 색상 및 재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시공시 설치되지 않는 전시품(가구, 실내장식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마감재 시설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소품,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지 않습니다.